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(10년 이상)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통해,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 및 병역에 대한 예우·존중 문화 확산
나. '19. 5. 2. ~ 12. 31.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(제로페이) 할인 규정을 삭제하여, 조례 정비 및 현행화

2. 주요내용

가. 시립체육시설 입장료(제9조) 및 개인연습사용료(제10조제1호) 감면대상에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(안 제9조제3항제1호, 제10조제1호다목)
나. 조례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할인규정 삭제(안 제9조제3항제3호, 제10조제1호다목 삭제)
다. 문구 정비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3. 5. ~ 3. 2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방준흠 (☎ 2133-2678)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설치·운영하는데”를 “설치·운영하기 위해”로, “건강증진과 여가선용”을 “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“별표1””을 “별표 1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질높”을 “질 높”으로, “관리·운영”을 “관리·운영(이하 운영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리·운영을”을 “운영을”로, “관리·운영(이하 “운영”이라 한다)함”을 “운영함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자 (이하”를 “자(이하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2항제2호 중 “진행중”을 “진행 중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본문 중 “체육경기 :”를 “체육경기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“체육행사 :”를 “체육행사: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공공행사 :”를 “공공행사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문화예술행사 :”를 “문화예술행사: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일반행사 :”를 “일반행사: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가”를 “시가”로 한다.

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조기 :”를 “조기: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주간 :”을 “주간: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야간 :”을 “야간: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조기 :”를 “조기: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주간 :”을 “주간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야간 :”을 “야간: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중 “주간사용시간”을 “주간 사용시간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제1호 중 “성 인 :”를 “성인: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청소년 :”를 “청소년: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어린이 :”를 “어린이: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문화예술행사 :”를 “문화예술행사:”로 하고, 같은

항 제2호 중 “일반행사 :”를 “일반행사 :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다만,”을 “다만,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주최측”을 “주최 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중 “수급자 :”를 “수급자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: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이용자 :”를 “이용자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본인 :”을 “본인: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호가목 중 “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”을 “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”으로, “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을 “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, “본인 :”을 “본인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“이용자 :”를 “이용자: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자 :”를 “자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가족, 「장애인복지법」”을 “가족, 「장애인복지법」”으로, “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”을 “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”으로, “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을 “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, “본인 :”을 “본

인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차상위계층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”를 “차상위계층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”로, “자:”를 “자:”로 하며,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당일 :”를 “당일: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10일전 :”를 “10일 전: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5일전 :”를 “5일 전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1일전 :”를 “1일 전:”으로 하며, 같은 호 항 제2호가목 중 “60일전 :”를 “60일 전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30일전 :”를 “30일 전: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20일전 :”를 “20일 전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10일전 :”를 “10일 전:”으로 하며, 같은 호 항 제3호가목 중 “20일전 :”를 “20일 전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15일전 :”를 “15일 전: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10일전 :”를 “10일 전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5일전 :”를 “5일 전: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1일전 :”를 “1일 전: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2항제1호 중 “60일전 :”를 “60일 전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항 제2호 중 “30일전 :”를 “30일 전:”으로 하며, 같은 호 항 제3호 중 “20일전 :”를 “20일 전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항 제4호 중 “10일전 :”를 “10일 전: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위해발생시”를 “위해가 발생할 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해서는 2026. 1. 1.부터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을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<u>설치·운영</u>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<u>건강증진</u>과 <u>여가선용</u>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설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·기능 및 그 위치는 “<u>별표1</u>”과 같다.</p> <p>제3조(관리·운영의 일반원칙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용자에게 <u>질높은</u>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<u>관리·운영</u>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<u>관리·운영</u>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체육시설을 <u>관리·운영</u>(이하 “운영”이라 한다)함에 있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·운영하</u> <u>기 위해</u> ----- ----- <u>건강 증진</u> <u>과 여가 선용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설치)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</u>----- -----.</p> <p>제3조(관리·운영의 일반원칙) ① ----- ----- <u>질 높</u>----- ----- <u>관리·운영(이하 운영</u> <u>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운영을</u> ----- ----- ----- <u>운영함</u>----- -----</p>

어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.

제4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)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,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4조의2(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, 수탁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(생략)
2. 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·노인 또는 아동 실종 등의 사고 발생을 인지하여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 진행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3. (생략)

제5조(사용허가) ①·② (생략)

----.

제4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) ① -----

자(이하 -----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2(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----- 진행 중 -----
-----.
3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사용허가) ①·② (현행과

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체육경기 :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서울특별시교육청(산하 지역교육청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협회(단체)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(주관)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. 다만,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5호에 따른 일반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.

2. 체육행사 : 제1호의 체육경기 외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행사. 단, 상업적 목적(광고, 방송 등) 행사는 제외한다.

3. 공공행사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(주관)하는 경기 및 행사

4. 문화예술행사 :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행사

같음)

③ -----
-----.

1. 체육경기: -----

-----.

2. 체육행사: -----

-----.

3. 공공행사: -----

4. 문화예술행사: -----

5. 일반행사 : 제1호부터 제4호
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
이외의 프로경기를 포함한 각
종 경기 및 행사

④·⑤ (생략)

제5조의2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

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
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
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
하여 허가한다.

1.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
최·주관하는 체육행사

2. ~ 7. (생략)

② (생략)

제5조의3(사용허가의 제한) ① 다
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
때에는 체육시설 사용·이용을
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
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6조(사용시간 등) ① 체육시설
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
이 구분한다.

1. 하절기(4월~9월)

가. 조기 : 05:00~08:00

5. 일반행사: -----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

① -----

-----.

1. ----- 시가 -----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3(사용허가의 제한) ① --
-- 각호-----

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사용시간 등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
가. 조기: -----

나. 주간 : 08:00~19:00

다. 야간 : 19:00~다음 날 05:00

2. 동절기(10월~다음 해 3월)

가. 조기 : 06:00~09:00

나. 주간 : 09:00~18:00

다. 야간 : 18:00~다음 날 06:00

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(생략)

2.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.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.

제7조(사용료) ① ~ ③ (생략)

④ 별표 2의 사용료 부과·징수 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성인 : 19세 이상

나. 주간: -----

다. 야간: -----
-

2. -----

가. 조기: -----

나. 주간: -----

다. 야간: -----
-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.

-- 주간 사용시간-----
--.

제7조(사용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성인: -----

람하거나 행사·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
2.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·지도요원·출전 선수 등이 경기·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

3.·4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.

1. 18세 이하인 자, 65세 이상인 자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주최 측

3.·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.

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분의 50 감액

2. 행사·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: 100분의 30 감액

3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: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4. (생략)

5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 : 면제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

----- 수급자,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: -----
--

2. -----

----- 이용자: -----

<삭제>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 본인: -----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

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 : 100분의 50 감액

나.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: 100분의 30 감액. 다만, 수영장 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: 100분의 30 감액

라. (생략)

마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: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. 다만,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

장법」-----

----- 본인: -----

나. ----- 이용자: -----.

다. -----

---- 자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: ----

라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따라 개인연습사용료를 감
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
아니함

바. (생략)

2.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
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. 이
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
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
나만을 적용한다.

가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
재된 가족, 「장애인복지
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
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
가유공자 및 「5·18민주
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
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
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
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에 따른 수급자, 「서울특
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
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

바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.

-----.

가. -----

--- 가족, 「장애인복지
법」-----

----- 5·18
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
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
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
항 ----- 사람,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산부 본인 : 100분의 50 감액

나. 18세 이하인 자(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65세 이상인 자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: 100분의 30 감액

다. ~ 마. (생략)

바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: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

사. (생략)

3. ~ 5. (생략)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삭 제 ②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(사용연기를 포함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 요청시기에 따라

---- 본인: -----

-

나. -----

----- 차상위계층

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

활동 지원조례」-----

---- 자: -----

-

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사. (현행과 같음)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

② -----

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.

1. 별표 3의 사용료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

가. 신청 당일 : 전액 반환

나. 10일전 : 전액 반환

다. 5일전 : 10분의 9

라. 1일전 : 10분의 7

2. 별표 3의 사용료 시설. 다만, 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.

가. 60일전 : 10분의 7

나. 30일전 : 10분의 5

다. 20일전 : 10분의 3

라. 10일전 : 10분의 1

3.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(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)

가. 20일전 : 10분의 9

나. 15일전 : 10분의 8

다. 10일전 : 10분의 7

라. 5일전 : 10분의 6

마. 1일전 : 10분의 5

③ ~ ⑤ (생략)

제11조의2(입장료의 반환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행사·경기의 개최일 전 관람취소

-----.

1. -----

가. -- 당일: -----

나. 10일 전: -----

다. 5일 전: -----

라. 1일 전: -----

2. -----.

-----.

가. 60일 전: -----

나. 30일 전: -----

다. 20일 전: -----

라. 10일 전: -----

3. -----

--

가. 20일 전: -----

나. 15일 전: -----

다. 10일 전: -----

라. 5일 전: -----

마. 1일 전: 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입장료의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60일전 : 10분의 7
2. 30일전 : 10분의 5
3. 20일전 : 10분의 3
4. 10일전 : 10분의 1

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.

1.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뚜렷한 위해발생시
2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60일 전: -----
2. 30일 전: -----
3. 20일 전: -----
4. 10일 전: -----

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-- 위해가 발생할 때
2.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해서는 2026. 1. 1.부터 제9조 제3항제1호 및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장기복무 세대군인 감면을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항	관련내용
1	제9조(입장료)	입장료 50%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
2	제10조(사용료의 감면)	개인연습사용료 30%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장기복무제대군인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**입장료 50% 감면**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9조)
- 장기복무제대군인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**개인연습사용료 30% 감면**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10조제1호다목)

나. 전제

- (감면대상) 서울시 거주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총 10,000명으로 전제하며 이를 활용해 전체 내국인 시민 대비 비율을 0.10%¹⁾로 산정
 - 서울시 거주 장기복무제대군인 수는 추계기간 내 동일한 수를 전제하여 추계
- (수입액) 2024년도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수입 기준으로 추계
- (발생기간)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소요됨을 전제
 - ※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라. 방법 : 각 시설 관리기관별 제출자료 활용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수입	입장료 세입감소	△50	△50	△50	△50	△50	△250
	개인연습사용료 세입감소	△146	△146	△146	△146	△146	△730
	소계(b)	△196	△196	△196	△196	△196	△980
□ 총 비용(a-b)		△196	△196	△196	△196	△196	△980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주무관 방준흠(02-2133-2678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장기복무제대군인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**입장료 50% 감면**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9조)
- 장기복무제대군인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**개인연습사용료 30% 감면**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10조제1호다목)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= **980천원**(연평균 196천원)

$$- \text{산출방식} = \sum_{i=1}^5 (\text{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감면에 따른 연평균 세입감소액})_i$$

$i = \text{비용추계 연차}(2025\text{년} \sim 2029\text{년})$

나. 장기복무제대군인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감면에 따른 연평균 세입감소액 = **196천원**

$$= \text{입장료 연평균 수입감소액} + \text{개인연습사용료 연평균 수입감소액}$$

$$= 50\text{천원} + 146\text{천원}$$

※ 시설별 세부추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시설명	구분	2024년 수입액	장기복무 제대군인비율	감면비율	수입감소예상액
합계	합계	584,842			196
	입장료	99,875	0.10%	50%	50
	개인연습사용료	484,967	0.10%	30%	146
잠실종합 운동장	소계	382,551			122
	입장료	33,858	0.10%	50%	17
	개인연습사용료	348,693	0.10%	30%	105
목동종합 운동장	소계	26,675			11
	입장료	16,567	0.10%	50%	8
	개인연습사용료	10,108	0.10%	30%	3
서울월드컵 경기장	소계	24,050			12
	입장료	24,050	0.10%	50%	12
	개인연습사용료	-	0.10%	30%	0
고척 스카이돔	소계	126,166			38
	입장료	-	0.10%	50%	0
	개인연습사용료	126,166	0.10%	30%	38
장충 체육관	소계	25,400			12
	입장료	25,400	0.10%	50%	12
	개인연습사용료	-	0.10%	30%	0

※ 입장료·개인연습사용료가 없는 2개 시설(구의·신월야구장) 및 자립형 민간위탁시설 2개소(효창운동장·산악문화체육센터)는 추계대상에서 제외

※ 잠실·목동종합운동장은 실내체육관·풋살구장·보조경기장 등 내부시설 포함하여 산정

1) 서울시 내국인 등록인원 현황 9,729,107명('25.2월 기준) / 서울 거주 장기복무제대군인 규모는 국방 관련 사항이므로 10,000명으로 추계